

대한 水質檢査를 徹底히 하겠으며, 또한 8萬餘名에 대하여 장티푸스 外 5種의 法定 傳染病에 대한 無料 豫防接種을 實施하고 에이즈 保菌者 索出과 結核, 性病 管理에도 萬全을 기하겠으며 肝炎, 寄生蟲 檢査와 消毒義務施設에도 반드시 年 2回 巡廻 指導 點檢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年度 主要 業務實踐은 報告書 참조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以上 報告 드린 事項에 대하여 區廳長 以下 全職員이 한마음 한뜻으로 誠實히 實踐할 것을 다짐드리고 아울러 여러 議員님들의 健勝을 빌며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元壽 俞永植總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區政에 관한 報告를 終結할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다음 案件을 處理하기 爲하여 2時 50分에 會議을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議長 金元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第2次 本會議 議事日程 第3項 麻浦區 議會 議員의 日費와 旅費支給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尊敬하는 曹熙太 議員님께서서는 나오셔서 提案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曹熙太議員 서울 特別市 麻浦區 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條例안에 대한 提案 說明을 하게 된 아현1동 출신 曹熙太 議員입니다. 地方自治法 第32條 및 同法 旅行令 第15條에 根據하여 議員에 대하여 支給하는 日費의 支給에 관한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자 尊敬하는 議員들께 配付해 드린 案과 같이 서울 特別市 麻浦區 議會 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條例案을 提案 하겠습니다.

本 條例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第2條 第1項에 議員이 議會에 出席하는 境遇에는 會期中에 한하여 日費를 支給하고 第6條에 日費의 支給基準을 定하여, 日費는 出席日數 1일에 3萬원을 支給하도록 規定

하였으며, 第5條에 議員이 公務로 旅行할 때에는 旅費를 支給하고 第7條 別表에 國內 旅費 및 國外 旅費에 대한 支給 基準을 定하였습니다.

條例案의 各 條文別 細部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으로 한다.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마포구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마포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최초집회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락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특지 4,500 감지 4,500 울지 4,000	특지 16,00 감지 15,000 울지 13,500	특지 10,500 감지 10,000 울지 9,000	800
의원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특지 4,000 감지 4,000 울지 3,500	특지 13,500 감지 11,500 울지 10,500	특지 10,000 감지 9,500 울지 8,500	800

비고: 1. “특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과천시·경주시 및 제주시로, “감지”는 도청소재지·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의정부시·안산시·구리시·원주시·강릉시·속초시·충주시·이리시·군산시·목포시·여주시·나주시·구미시·포항시·영천시·마산시·울산시·진주시·서귀포시로, “울지”는 기타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율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7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일 비 (1 일 당)	숙 박 비 (1 야 당)	식 비 (1 야 당)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 부 의 장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1등급역		가동급 25	가동급 100	가동급 53	140	170	195
					나동급 25	나동급 79	나동급 46			
					다동급 25	다동급 60	다동급 40			
					라동급 25	라동급 40	라동급 33			
의 원	·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동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실비액	가동급 20	가동급 83	가동급 48	130	155	180
					나동급 20	나동급 66	나동급 42			
					다동급 20	다동급 50	다동급 36			
					라동급 20	라동급 33	라동급 3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동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동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나. 나동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노르웨이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다. 다동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라. 라동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네시아, 버마, 스리랑카, 필리핀, 네덜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페루

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과아이, 아르헨티나

(3) 유럽주: 해당국가 없음

(4) 중동·아프리카주: 레바논, 북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3]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 (제8조 제1항 관련)

여 행 거 리	지 급 액
12킬로미터 이상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전액
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	별표 1의 현지교통비의 5할
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
2킬로미터 미만	지급하지 아니함

비고: 대중교통이라 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대중교통수단의 정기운행간격이 1시간이상인 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以上 提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일 동 박 수)

○議長金元泰 지금 曹熙太 議員님께서 提案 說明한 서울 特別市 麻浦區 議會 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條例案은 여러 議員들께서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서울 特別市 麻浦區 議會 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條例案에 대해서 여러 議員들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議 員 席 없습니다.

○議長金元泰 의의가 없으시면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麻浦區 議會 決算 檢査委員 選任, 運營 및 實費辨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尊敬하는 蔡雲錫 議員님께서 나오셔서 提案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蔡雲錫議員 尊敬하는 議員여러분! 서울 特別市 麻浦區 議會 決算 檢査 委員 選任, 運營 및 實費 辨償 條例案에 대한 提案 說明을 하게 된 望遠 1洞出身 蔡雲錫議員입니다. 地方自治法 第125條를 보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가 선임한 檢査委員의 檢査 意見書를 添附하여 決算 承認을 要請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同法 施行令 第46條에는 檢査 委員의 數는 3人以內로 하되 當해 地方議會 議員이나 公認會計士等 財務 管理에 관한 專門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 中에서 選任하며 選任方法, 運營 및 實費 辨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規定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細部 事項을 規定하여 效率的인 決算檢査를 遂行하고자 尊敬하는 議員들에게 配付해 드린 案과 같이 서울 特別市 麻浦區 議會 決算 檢査 委員의 選任, 運營 및 實費 辨償에 관한 條例案을 提案하였습니다. 本 條例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第